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Kuala Lumpur Office)**

**결정문 (ADMINISTRATIVE PANEL DECISION)**

**AIAC/ADNDRC-649-2019**

---

신 청 인 (Complainant): 아세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스 에스디엔 비  
에이취디 (Asian Business Software Solutions Sdn Bhd) (대리인:  
싸씨벨/굴프리트 카울 씨듀; represented by Sathivel/Gurpreet  
Kaur Sidhu)

피신청인 (Respondent): 박현주(Park Hyunju)

---

1. 당사자 (Parties)

신청인(Complainant):

아세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스 에스디엔 비에이취디  
(Asian Business Software Solutions Sdn Bhd)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소재)

신청인의 대리인 (Represented by):

싸씨벨/굴프리트 카울 씨듀 Sathivel/Gurpreet  
Kaur Sidhu(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소재)

피신청인 (Respondent):

박현주(Park Hyunju)(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거주)

2. 등록기관과 분쟁도메인이름 (REGISTRAR AND DISPUTED DOMAIN NAMES)

분쟁도메인이름은 <financio.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메가존(주) (Megazone Corp., dba HOSTING..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46 GALA빌딩 7층)에 등록되어 있다.

### 3. 행정패널 (PANEL)

남호현 (Ho Hyun Nahm, Esq.) 행정패널은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하였다.

### 4. 절차의 경과 (PROCEDURAL HISTORY)

신청인은 2018. 12. 2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말레이시아(이하 '센터' 라고 함)에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등록기관은 2019. 1. 2. 센터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임과, 피신청인은 등록기관의 등록약관에 구속되며 이 등록약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분쟁은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 이하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되어 있음과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확인해주었다. 2019. 1.2. 센터는 신청인에게 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임과 신청서를 한국어로 제출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2019.1.7. 센터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접수하였다. 2019. 1. 1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이 2019. 1. 31.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2.11. 센터는 센터의 보충규칙에 따라 남호현(Ho Hyun Nahm, Esq.)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남호현(Ho Hyun Nahm, Esq.) 위원으로부터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 5. 신청인의 청구 취지 (RELIEF SOUGHT)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다.

## 6. 인정사실 (FACTUAL FINDINGS)

(i) 분쟁 도메인이름은 2011. 5.10. 등록되었다.

(ii) 신청인은 회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체이다. “Financio”는 신청인의 제품 브랜드로서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과 비 회계사를 위해 설계되었다. “Financio”는 회계 및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하여 남아시아 12개국에 중소기업, 데스크톱 및 클라우드 회계관리,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미수금 등을 단순화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7년 설립된 이래 광범위한 광고 활동을 전개하였고 “Financio” 제품의 매출액은 대략 RM137,000.00(미화 약 33,600.00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iii) 신청인은 영어 단어 ‘Financio’ 에 도형을 결합한 상표 (이하 ‘신청인의 상표’)에 관하여 2017.4.17. 필리핀 지적재산권청에 상표등록번호 4/2017/00501556호로; 2017.3.23. 싱가포르 상표 등록청에 상표등록번호 40201704858V호로; 2017.3.30. 홍콩 지적재산권청에 상표등록번호 304095441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iv) 분쟁도메인이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passive holding).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미화 15,000 달러에 판매한다고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 협상을 제안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미화 40,000달러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대리인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미화 20,000달러를 유구한 바 있다.

## 7. 당사자들의 주장 (PARTIES’ CONTENTIONS)

### A. 신청인 (Complainant)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 신청인은 회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체이다. “Financio”는

신청인의 제품 브랜드로서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과 비회계사를 위해 설계되었다. “Financio”는 회계 및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하여 남아시아 12개국에 중소기업, 데스크톱 및 클라우드 회계관리,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미수금 등을 단순화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7년 설립된 이래 광범위한 광고 활동을 전개하였고 “Financio” 제품의 매출액은 대략 RM137,000.00(미화 약 33,600.00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i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신청인은 영어 단어 ‘Financio’에 도형을 결합한 상표 (이하 ‘신청인의 상표’)에 관하여 2017.4.17. 필리핀 지적재산권청에 상표등록번호 4/2017/00501556호로; 2017.3.23. 싱가포르 상표 등록청에 상표등록번호 40201704858V호로; 2017.3.30. 홍콩 지적재산권청에 상표등록번호 304095441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신청인의 상표 “Financio”는 말레이시아에서 출원 계류 중이지만 2017년부터 신청인의 상표를 상거래에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이 상표에 보통법상의 권리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Financio” 상표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상표 사용은 선의 또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미화 15,000 달러에 판매한다고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을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실한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러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비상업적 또는 공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는 소극적 보유(passive holding)를 하고 있다.

(iv)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미화 15,000 달러에 판매한다고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 협상을 제안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미화 40,000달러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대리인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미화 20,00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것이다. 이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증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B. 피신청인 (Respondent)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8. 검토 및 판단 (DISCUSSION)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 행정패널은 당 패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론을 하기로 한다. 당 패널은 증거가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는 한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합리적인 주장과 추론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조: *Vertical Solutions Mgmt., Inc. v. webnet-marketing, inc.*, FA 95095 (Nat. Arb. Forum July 31, 2000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은 신청서 주장의 사실에 관한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Talk City, Inc. v. Robertson*, D2000-0009 (WIPO Feb. 29, 2000)(답변서 제출이 없는 경우, 신청서의 모든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다.)

#### A. 상표 · 서비스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유사 (Identical and/or Confusingly Similar)

규정 제4조 (a)항 (i)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함은 반드시 피신청인의 거주국에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일 것을 요하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조: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1.1.2 (noting in particular the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and Domain Name System, the jurisdiction(s) where the trademark is valid is not considered relevant to panel assessment under the first element.).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등록된 것이거나 반드시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보통법상 형성된 권리를 포함한다. 참조: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1.1.1 (the term ‘trademark or service mark’ as used in UDRP paragraph 4(a)(i) encompasses both registered and unregistered (sometimes referred to as common law) marks.).

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에 관하여 2017.4.17. 필리핀 지적재산권청에 상표등록번호 4/2017/00501556호로; 2017.3.23. 싱가포르 상표 등록청에 상표등록번호 40201704858V호로; 2017.3.30. 홍콩 지적재산권청에 상표등록번호 304095441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이는 규정 제4조 (a)항 (i)에 따라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인정된다.

분쟁도메인이름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는 확장자에 불과한 ‘.com’ 부분을 제외한 ‘financio’ 부분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 ‘financio’가 신청인의 상표 중 문자 부분 ‘financio’와 동일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 (i)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 B. 부정한 목적의 등록과 사용 (Registration and Use in Bad Faith)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미화 15,000 달러에 판매한다고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 협상을 제안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미화 40,000달러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대리인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미화 20,00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것이며 이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증거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 제4조 (a)항 (iii)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conjunctive requirement). 그런데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2011.5.10.)이 신청인의 상표 등록 중 그 등록일이 가장 이른 싱가포르 상표 등록청의 상표등록번호 40201704858V호의 등록일 2017.3.23. 보다 이르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3.8.1 (where a respondent registers a domain name before the

complainant' s trademark rights accrue, panels will not normally find bad faith on the part of the respondent.).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 (iii)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당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항 (iii)의 요건 (부정한 목적의 등록과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규정의 다른 요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참조: *Creative Curb v. Edgetec Int' l Pty. Ltd.*, FA 116765 (FORUM Sept. 20, 2002) (finding that because the complainant must prove all three elements under the Policy, the complainant' s failure to prove one of the elements makes further inquiry into the remaining element unnecessary); see also *Hugo Daniel Barbaca Bejinha v. Whois Guard Protected*, FA 836538 (FORUM Dec. 28, 2006) (deciding not to inquire into the respondent' s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or its registration and use in bad faith where the complainant c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olicy ¶II 4(a)(i)).

## 9. 결정 (DECISION)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하나 신청인은 위 규정 제4조 (a)항(iii)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  
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Having not established all three elements required under the ICANN  
Policy, the Panel concludes that relief shall be DENIED.)



---

1인 행정패널

남 호 현 (Ho Hyun Nahm, Esq., Single Panelist)

결정일자: 2019. 2. 21